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1. 6. 14.(월) 10:00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,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5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 5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세입·세출 결산

1.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

가.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7,211,764,000	8,579,328,700	8,061,243,980	73.3%
교통행정과	2,422,518,000	2,929,507,250	2,450,395,550	83.6%
건설행정과	1,850,646,000	2,089,506,620	2,056,694,050	98.4%
도 로 과	2,509,600,000	3,127,504,830	3,121,344,380	99.8%
치 수 과	429,000,000	432,810,000	432,810,000	100%

나. 세출 총괄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 (B/A)
계	18,353,831,950	15,610,043,160	2,147,378,890	541,239,976	85%
교통행정과	941,168,000	859,090,450		46,970,346	91.2%
건설행정과	3,635,566,000	3,601,811,130		33,417,370	99.1%
도 로 과	8,633,342,950	6,607,351,330	1,763,561,320	252,528,020	76.5%
치 수 과	5,143,755,000	4,541,790,250	383,817,570	208,324,240	88.3%

○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80억 6,124만 3천원으로 징수률 73.38%이며

○ 일반회계 지출액은 156억 1,004만 3천으로,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4,737만 8천원이며, 집행잔액은 5억 4,1232만 9천원임.

다. 집행잔액(불용액)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집행잔액	불용율 (%)	사 유 별			
				계획변경등집행 사유미발생	예 결 산 감	예 산 집 행 잔	보 조 금 집 행 잔 액
계	18,353,831,950	541,239,976	2.9	74,309,290		466,911,320	19,366
교통행정과	941,168,000	46,970,346	4.9	4,380,000		42,570,980	19,366
건설행정과	3,635,566,000	33,417,370	0.9	2,620,000		30,797,370	
도로과	8,633,342,950	252,528,020	2.9			252,528,020	
치수과	5,143,755,000	208,324,240	4.1	67,309,290	0	141,014,950	

○ 교통건설국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액(가)	지출액(나)	이월액(다)	집행잔액 (가-나+다)	집행률 (나/가)
교통행정과	계	-	-	-	-	-
		-	-	-	-	-
주차관리과	계	9,747,427,540	5,337,946,960	829,248,320	3,269,288,280	54.7%
	공영주차장 건설	9,358,853,540	5,081,090,610	829,248,320	3,175,778,750	54.3%
	Green Parking 조성	211,186,000	142,638,910	-	30,338,970	67.5%
	주차위반 과태료 과징	177,388,000	114,217,440	-	63,170,560	64.3%
건설행정과	계	11,043,000	2,060,000	-	8,983,000	18.6%
	국·공유 행정재산 관리	9,163,000	2,060,000	-	7,103,000	22.5%
	손실보상 관리	1,880,000	-	-	1,880,000	0%
도로과	계	2,140,362,000	421,959,920	1,512,312,000	12,384,920	19.7%
	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1,558,221,000	94,185,170	1,462,662,000	1,373,830	6.0%
	금천폭포공원 작품조성사업	50,000,000	-	49,650,000	-	0
	신속한 제설대책	532,141,000	327,774,750	186,896,000	11,011,090	61.1%
치수과	계	838,000,000	453,712,050	383,817,570	470,380	54.1%
	빗물펌프장 시설 개선	838,000,000	453,712,050	383,817,570	470,380	54.1%

※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(집행률 70% 미만 사업)

2. 예산의 전용 현황

○ 예산전용 현황 : 해당사항 없음.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10	2,147,379	3	1,505,858	7	641,521
교통행정과	-	-	-	-	-	-
주차관리과	-	-	-	-	-	-
건설행정과	-	-	-	-	-	-
도로과	9	1,763,561	3	1,505,858	6	257,703
치수과	1	383,818	-	-	1	383,818

○ 명시 이월사업비 현황 : 3건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원인행위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도로과	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시설비	1,477,800	15,138	1,462,662	[연도 내 지출 불가] 현 시점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금 미확정
		공공운영비	52,566	33,406	19,000	[집행시기 미도래] 제설대책 기간 내 제설장비 수리를 위하여 이월
	재료비	110,1350	85,118	24,196		

○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: 8건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세 부 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원인행위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 월 사 유
도로과	관내 도로보수	시설비	2,221,484	2,214,031	64,353	겨울철 발생될 수 있는 도로파손 등에 대비
	금천폭포공원 작품조성사업	시설비	50,000	49,650	49,650	2020년 11월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결과 디자인 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디자인보완
	신속한 제설대책	공공운영비	52,566	33,406	6,000	용역기간이 '20.11.15 ~ ' 21.3.15.일로 회계연도 내 사업종료가 불가
		재료비	110,135	85,118	6,000	
		민간위탁금	160,000	160,000	80,000	
시설비	124,560	124,560	51,700			
치수과	빗물펌프장 시설 개선	시설비	838,000	837,530	383,818	관련기관(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) 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 발생

○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중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,

- 명시이월은 총 3건 15억 585만 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- 사고이월은 총 7건 6억 4,15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Ⅲ. 202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1. 세입결산 현황

(단위: 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15,642,707,540	23,280,458,453	15,300,631,743	65.7%
세외수입	5,586,490,000	13,239,570,463	5,259,743,753	39.7%
보조금	177,902,000	161,102,000	161,102,000	100%
보전수입등 맞내부거래	9,878,315,540	9,879,785,990	9,879,785,990	100%

○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

- 예산 현 액은 156억 4,270만원이고
- 징수 결정액은 232억 8,045만 8천원이며
- 수 납 액은 153억 63만 1천원임.
-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65.7%이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39.7%이며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.

2. 세출결산 현황

(단위: 원)

부 서 명	예산현액	지 출 액	다음연도 이 월 액	집 행 잔 액	
				금 액	%
주차관리과	15,642,707,540	10,490,432,910	829,248,320	4,012,082,330	67

○ 202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56억 4,270만원으로, 104억 9,043만 2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0억 1,208만 2천원으로 집행률은 67%임.

IV.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

○ 기금 결산현황

(단위: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2,685,864,300	62,300,230	1,422,730,210	1,192,268,110	2,916,326,400
옥외광고발전기금	1,052,874,230	189,517,460	302,950,650	113,433,190	1,242,391,690
도로굴착복구기금	1,632,990,070	40,944,640	1,119,779,560	1,078,834,920	1,673,934,710

-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, 도로굴착 복구기금 2개 기금으로,
- 전년도말 조성액은 26억 8,586만 4천원이며
 -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9,226만 8천원으로
 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억 1,632만 6천원임.

관계법령

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4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9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할 수 있다

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「지방회계법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- 제14조(결산의 수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☞ 기금 관련 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7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